

**【별표3】 : 개정**

**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기준(제16조 관련)**

**㉠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**

**【전체 학습기업에 '20.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】**

- (기본방침) 월별 최대 학습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정액 지급. 다만,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\*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(심화과정 이수)하고 학습근로자 훈련 및 지원활동을 한 경우 개인별 월 1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(교육이수한 다음달부터 정액 지급)

- (계산식)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 수당 정액 지급

\* 훈련 초월,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

<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별 지급액>

(단위: 만 원)

학습근로자수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	11명	12명	13명 이상
월별 지급액	33.3	41.6	50	58.3	66.7	75	83.3	91.6	100	108.3	116.6	125	133.3

- (수당지원)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

## ② HRD담당자 수당

### 【전체 학습기업에 '20.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】

- (기본방침) 월 25만원을 정액 지급하되,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지급. 다만,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\* 훈련 초월,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
- (수당지원)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당 지급